

- 2026년 하반기 -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신규) 접수 안내

I. 모집내용

- 접수기간 : 2026. 8. 5.(수) ~ 2026. 8. 13.(목)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
- 모집사업 : 12개 사업 600명(선착순 접수 아님)
- 이용기간 : 2026. 9. 1. ~ 2026. 8. 31.(12개월)(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연번	사업명	사업내용	선정인원(명)		
			계	대기자	신규모집
1	아동정서발달서비스	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	100	26	74
2	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	언어/인지/놀이/미술재활	200	103	97
3	오감쑹서비스	놀이지도, 미술활동, 동화구연	30	23	7
4	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	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	75	-	75
5	성인심리상담서비스	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	125	8	117
6	돌봄틈새제로서비스	장기요양 등급외자 돌봄서비스	30	-	30
7	치매예방 '인지건강 프로젝트'	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	50	-	50
8	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	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	20	-	20
9	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	안마서비스	140	140	-
10	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	위기상황개입/증상관리, 일상생활지원	50	-	50
11	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	재활승마 및 상담	30	-	30
12	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	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	50	-	50

■ 신청자 선정기준

- 사업별 모집 및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
 - 공적연계 우선 선정사업(아동정서발달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,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)과 돌봄틈새제로서비스(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/ 2순위: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아래 우선 순위 동일)
 - 1순위: 신청시점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

- 2순위: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(서비스) 생애 최초 신청자
- 3순위
 - (공통)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
 - (성인심리상담서비스만 적용)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, 임산부(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택1 제출),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인 출산모

II. 신청안내

■ 신청권자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이 신청·접수

* 제공기관 대리 신청·접수 불가

■ 제출서류

연번	신청서명	비고
1	사회보장급여 제공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서	공통서식 제1호 - 25년 변경
2	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	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-공통서식 제5호의 1(24년 추가) 그 외 서비스-공통서식 제5호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공통서식 제21호
4	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당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	공통서식 제2호 공통서식 제3호 - 25년 변경 공통서식 제4호(만 14세 미만)
5	기타 욕구기준,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	'2025년 사업별 세부매뉴얼' 확인

※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 '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'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가능함(체증 확인가능 서류-25년 변경)

■ 참고사항

- 상반기 미선정된 대기자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
 -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대기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므로 하반기 신규모집 인원 없음
- 연간 1인 1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(등록장애인에 한해 2개 허용)
-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
-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재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
 - 예)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→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
- 서비스이용: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
- 서비스중지: 2개월 이상 미사용, 본인부담금 미납부, 타구 전출 등
- 대기자관리: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"대상제외"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 가능(당해연도만 가능)
-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타 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

■ 문의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 복지정책과 (☎032-560-4295)